인천 청라지구 A35블록 골드클래스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점에는 인접학교 외의 초등학교(중,고등학교는 서구내 학교)로 취학할 수 있으며, 현 토지이용계획도의 학교용지는 위치 및 종류 등이 변경(폐지포함)될 수 있음.(초9 및 고5 부지는 폐지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12382호 (2009. 09. 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35블록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18~25층 아파트 3개동 총 192세대[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3세대, 3자녀특별공급 5세대] 및 기타 부대 · 복리시설
대지면적 15,677.00㎡[아파트 15,361.00㎡, 근린생활시설 316.00㎡]

▣ 공급면적 및 세대수

(단위 : ㎡)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 형 (주거전용)	세대별 계약면적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					비고
				주거전용면적 (공급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그 밖의 공용면적					특별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계		홈 주택형표기 (주거전용 + 주거공용)
							지하주차장	기타공용				경제자유구역	3자녀				
민영주택	22207-01	2009000587 (01)	116.4914	116.4914	25.5246	142.0160	53.1839	6.4470	201.6469	79.8600	2	3	122	127	142.0160		
	22207-02	2009000587 (02)	117.1169	117.1169	26.7138	143.8307	53.4694	6.4816	203.7817	80.2888	1	2	62	65	143.8307		

※ 2009.4.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 공급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공급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주택형	층		대지비	건축비	계	1차(5%)	2차(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09.10.16	2009.12.16	2010.05.16	2010.10.16	2011.03.16	2011.08.16	2012.01.16	입주지정일
116.4914	2	6	176,732	259,968	436,700	21,835	21,835	43,670	43,670	43,670	43,670	43,670	43,670	131,010
	3	6	180,375	265,325	445,700	22,285	22,285	44,570	44,570	44,570	44,570	44,570	44,570	133,710
	4	6	184,017	270,683	454,700	22,735	22,735	45,470	45,470	45,470	45,470	45,470	45,470	136,410
	5	6	187,659	276,041	463,700	23,185	23,185	46,370	46,370	46,370	46,370	46,370	46,370	139,110
	기준층	97	191,059	281,041	472,100	23,605	23,605	47,210	47,210	47,210	47,210	47,210	47,210	141,630
	최상층	6	198,060	291,340	489,400	24,470	24,470	48,940	48,940	48,940	48,940	48,940	48,940	146,820
117.1169	2	3	175,721	258,479	434,200	21,710	21,710	43,420	43,420	43,420	43,420	43,420	43,420	130,260
	3	3	179,363	263,837	443,200	22,160	22,16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44,320	132,960
	4	3	183,005	269,195	452,200	22,610	22,610	45,220	45,220	45,220	45,220	45,220	45,220	135,660
	5	3	186,648	274,552	461,200	23,060	23,060	46,120	46,120	46,120	46,120	46,120	46,120	138,360
	기준층	50	190,047	279,553	469,600	23,480	23,480	46,960	46,960	46,960	46,960	46,960	46,960	140,880
	최상층	3	197,048	289,852	486,900	24,345	24,345	48,690	48,690	48,690	48,690	48,690	48,690	146,070

1.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심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2.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음.
3.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금액 · 별도계약품목(옵션)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취득세 · 등록세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임.
4.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5.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
6.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7.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8.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9.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는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 · 후 각 3회 분할하여 받기로 함이 때,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후후 변동될 수 있음)
10.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발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수납하여야 함.(단,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수납하여야 함)
11.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12.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이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13.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함.
14.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초과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14일(월) (10:00~12:00) / 당사 견본주택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2)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년 09월 14일(월) (13:00) / 당사 견본주택(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공급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전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3세대/2%)

주택형	116.4914	117.1169	합계	비고
공급세대수	2	1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 · 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07-292호, 2007. 11. 9)의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당해지구 소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당해지구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 불포함)
나. '종사자' 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 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 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 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설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바. '무주택세대주' 라 함은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외국인은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세대 유의사항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9조 입주자격상실자에 대한 조치' 에 의거 계약자는 등기이전 완료 전까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전출, 퇴직 등)한 자는 분양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하고 사업주체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함.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제5조, 제6조' 에 의거 청약접수자는 청약접수 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주택특별공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해지되므로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는 본 입주자 모집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세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접수하고, 동·호수 추첨일 이후 당사에서 당첨자의 청약접수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추천서를 요청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해서 추천서를 발급하며, 추천서를 발급한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동·호수 추첨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해당 특별공급의 경쟁이 있을 경우, 외국인에게 우선 공급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 대상자 구비서류

외국인	내국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 국내기소신고사실증명서(인천광청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여권 및 비자(외국인)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1년 이상) • 재직증명서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시에 한함)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이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1년 이상)

※ 상기 제증명 서류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년 09월 10일)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3. 3자녀 특별공급(5세대/3%)

주택형	116.4914	117.1169	소계	비고
총계	3	2	5	
경기도(26%) / 서울특별시(24%)	1	1	2	
인천광역시(50%)	2	1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년 09월 10일)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합니다.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미혼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26%,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24%로 공급합니다.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사항
			점수	기준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40	40	4자녀 이상	• 자녀(입양아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5	3자녀	
	영유아	10	10	2명 이상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5	1명	
세대구성(2)		10	10	3세대 이상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기준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기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속비속으로 구성
			5	2세대	
무주택기간(3)		20	20	세대주 만40세 이상 +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15	세대주 만35세 이상 +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0	무주택기간 5년 미만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20	10년 이상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1년 미만	
비고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3) : 국토해양부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 (4) : 주민등록등 · 초본으로 확인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 주택에 비치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년 09월 10일)이후 발행분에 한하고,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년 09월 10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09년 09월 10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만 당해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음.[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청약 신청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청약시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
(단, 재당첨제한 적용기간 중이라도 2009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및 접수일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예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본(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본(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 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2009. 09.15 (화)	• 접수장소(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 당사 모델하우스 및 문화일보게재 예정 • 일 시 – 2009년 09월 23일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가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을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9. 09.16 (수)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9. 09.17 (목)	• 접수장소 – 광주은행 본,지점 및 모델하우스 • 접수시간 – 09:00 ~ 16:00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16:00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함]
※ 가점제 개요(가청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에 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05조의3 제4항)

구분	기타광역시(인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지역
전용면적 102㎡초과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2.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1) 청약등록일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 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자의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할 경우 신청가능.

3. 신청접수방법

1) 공 통
①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당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는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전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③ 1, 2순위
– 1순위자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1순위자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사실 여부 등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기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④ 3순위 : 중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⑤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인터넷 신청접수방법

구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3) 노약자 ·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는 모델하우스에 비치) • 청약예금 통장 (1, 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 (1, 2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 100만원 (3순위 청약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위임장은 모델하우스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노약자 · 장애우 등의 은행창구 청약접수시 은행업무시간을 숙지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이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4. 3순위 청약신청금

주택형별	청약신청금	신청금납부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9년 09월 24일) 부터(09:00 ~ 16:00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광주은행(단, 청약자 본인의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실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본인 ·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영수증, 신분증, 청약당시 사용인장 또는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의 환불시)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서류 외에 제3자 신분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날인) 1통
• 3순위 당첨자의 청약 신